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325호

**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 
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(안)**

2018. 7. 30

**식품의약품안전처**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325호

「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3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

####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(안)

#### 1. 개정 이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신규 수입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허용 축산물에 반영하고,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유가공품 정의 수정(안 제2조)

- 1)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
- 2) 유가공품의 정의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를 명확화

#### 나.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(안 제5조)

- 1) 수출제품은 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수입위생요건으로는 요구하되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모든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
- 2)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
- 3)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방지

#### 다.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(안 별표)

- 1)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, 가공유류, 유크림류와 체코산 우유류, 가공유류, 발효유류, 농축유류, 유크림류, 버터류, 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
- 2)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 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

### 3. 의견 제출

「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(우편번호 : 363-700, 주소 :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: 현지실사과, 전화 043-719-6204, 팩스 043-719-324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 호

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7-111호, 2017. 12. 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(안)

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발효유류”를 “분유류, 발효유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출축산물(선적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

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(또는 지역) 축산물(제3조 관련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(또는 지역 별)의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.

## 2. 원유 및 유가공품

### 나. 유가공품

국가 또는 지역	종류	비고
오스트리아	<u>가공유류</u> , 발효유류, 분유류, 유당, <u>우유류</u> , 유청류, <u>유크림류</u> , 조제유류, 치즈류	
체코공화국	<u>가공유류</u> , 농축유류,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<u>아이스크림류</u> , <u>우유류</u> , 유청류 <u>유크림류</u> , 치즈류	

## 3. 식용란 및 알가공품

### 나. 알가공품

국가 또는 지역	종류	비고
네덜란드	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<u>난황액</u> 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덴마크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<u>난황액</u> 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독일	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<u>난황액</u> , 알가열제품, <u>전란액</u> , <u>전란분</u>	
미국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분, <u>전란액</u> , <u>피단</u>	
이탈리아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난황액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캐나다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난황액, <u>알가열제품</u> 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
### 다. 알가공품(한시적 수입허용: 2018년 1월 13일까지)<삭제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"유가공품"이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우유류(저지방우유류 및 무지방우유류를 포함), <u>발효유류</u>, 버터류, 치즈류, 유당분해우유, 가공유류, 산양유, 버터유류(버터유를 말함), 농축유류, 유크림류, 유청류, 유당,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, 조제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(아이스크림분말류 포함)를 말한다.</p> <p>7. ~ 10. (생략)</p> <p>제5조(수출위생증명서)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,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4조제1호부터 <u>제3호</u>까지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분유류, 발효유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수출위생증명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제2호</u>-----</p>

준수여부

2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